##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방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
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는 비록 토지의 구체적 상황에 따른 평가방법에 관 하여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,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(이하 "특례법"이라 한다) 제4조 제2항 제1호. 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. 제2항은 토지의 일반적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하되 일시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 고 산정함으로써 적정가격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바, 불법으로 형질변 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. 허가 등을 받음이 없이 형질변경행 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에도, 그러한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된 상태에 따라 상승된 가치로 평가한다면, 위법행위로 조성된 부가가치 등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'적정보상' 의 원칙이 훼선될 우려가 있으므로. 이와 같은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'적정가격'을 초 과하는 부분을 배제하려는 것이 특례법시행규칙(1995.01.07.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된 것) 제6 조 제6항의 규정 취지라고 이해되고, 따라서 위 규정은 모법인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호,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, 제2항에 근거를 두고,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적정 한 산정방법의 구체화·명확화 한 것인지, 모범의 위임 없이 특례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예정하고 있 지 아니한 토지의 산정방법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모법에 위 반된다고 할 수 없으며, 또한 특수한 토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 6항의 적용 여부는 평가의 기준시점에 따라 결정되므로. 비록 개정된 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라 하더라도, 위 개정 조항이 시행된 후에 공공사 업시행지구에 편입되었다면 개정 조항을 적용하여야 하고, 부칙(1995.01.07.)제4항에서 위 개정 조 항 시행 당시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 형질변경토지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하여, 이를 들어 소급입법이라거나 헌법 제1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고 할 수 없다.<BR>(대법원 2002.02.08. 선고 2001두7121 판결)<BR>&nbsp;